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10. 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10. 11

라. 상정일자 : 2010. 10. 27(제188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배기량별 차등 적용에서 6% 정율로 조정함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매입요율도 조정하여 시민부담 경감 및 지방세 세수 증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채”을 “채권”으로 명칭 변경

나. 주요골자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 변경

○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시 채권매입요율을 조정함.(안 제3조).

-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요율을「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승차정원 6명이하인 비사업용 신규 등록시 배기량에 따라 9~20% 차등적용을 6% 정율로 인하하고 상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임.

○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은 면허·허가·인가를 받는자, 등기·등록 신청자 및 건설도급계약 체결자 등 15개 항목입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374억 3,583만 5천원이며 발행조건은 연 2.5% 복리로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임.

○ 금년도 매입기간은 2010. 3. 26일 종료되었으며 종료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 인하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주에 적합하며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채권 매출액 감소에 따른 대체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 이성만 의원

- 자동차등록유지를 위해 조례개정에 그치지 말고 시차원에서 적극적 인유치장치를 마련

<답 변>

○ 백은기 건설교통국장

- 대우자동차와 적극적인 협의로 계획을 세우겠음.

<질 의>

○ 정수영 의원

-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채권매입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이유

<답 변>

○ 백은기 건설교통국장

-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요율 변경으로 형평성을 유지코자 조정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도형, 안병배, 류수용, 이성만, 제갈원영 위원

나. 반 대 : 정수영 위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 찬성 : 5명, 반대 1)

7. 소수의견 요지

○ 공채 매입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도시철도법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제2조 중 제목 “(공채의 발행한도)”를 “(채권의 발행한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시철도공채”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목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을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도시철도공채”를 “도시철도채권”으로, “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을 “「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로,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교통부령 제655호)”를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로 한다.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신규등록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다)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도시철도공채”를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로 하고,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도시철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
제2조 (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	제2조 (채권의 발행한도)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라 한다) --------.
제3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제3조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승차정원 6명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신규등록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다)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6
1.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 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2. (종전의 1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2.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	3. (종전의 2호와 같음)
3.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종전의 3호와 같음)
②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교통부령 제65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4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후 일시상환한다. 단,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4조 ---------- ① 도시철도채권은 ----------.
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② 도시철도채권----------.